

제32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2025. 9. 23.



의회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712호
- 발 의 일: 2025년 9월 1일
- 발 의 자: 양은숙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9월 8일
- 상정 및 의결: 2025년 9월 18일

2. 제안사유

- 달성군의회 의원 및 의원 당선자에 대한 교육 연수 계획 수립과 교육 실시, 개별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의회 의장 및 의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교육연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의원 개별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는 달성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교육과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며, 세부적으로는 교육 연수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연간 교육 연수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최근 지방의회와 의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책임성이 커짐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과 연수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합리적인 입법활동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지방의원의 전문성 향상은 단순한 개인의 역량 강화 차원을 넘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질을 높이고 의회에 대한 신뢰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전국 상당수 지방의회에서 이와 유사한 취지의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어 전국적인 추세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본 조례안은 달성군의회 의원들의 전문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할 것임으로 타당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